「평창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
일부개정조례안」

심 사 보 고 서

1. 심사경과

○ 제안일자 및 제안자: 2024년 5월 7일, 평창군수 제출

○ 회부일자: 2024년 5월 17일 회부

○ 상정일자: 제294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
(2024년 5월 17일 상정・의결)

2. 제안설명의 요지 (제안설명자: 기획실장)

가. 제안이유

❍ 행정안전부 기금 개선 권고사항 반영을 위하여 위원회 구성을 변경하고, 평창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존속기한 도래에 따라 기금 존속기한을 연장하여 회계연도 간 재정수입 불균형을 조정하고 동일 회계연도 내에서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자 함.

나. 주요내용

❍ 위원회 구성인원을 ‘12명 이내’에서 ‘20명 이내’로 변경하고 조례에 명기된 민간전문가 정원을 삭제하여 행정안전부 기금 개선 권고사항인 ‘민간위원 50% 이상 선정’을 반영하고자 함

(안 제8조제1항, 제2항)

❍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 제4조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한 연장을 반영하고자 함(안 제14조)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(전문위원: 김영옥)

※ 검토보고서 전문 ····· [붙임 1]

4. 질의 및 답변 요지:「생략」

5. 토론 요지: 「없음」

6. 심사 결과:「원안가결」

7. 소수의견 요지:「없음」

8. 기타 사항:「없음」

붙임 1. 평창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1부.

2. 평창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.

[붙임 1]

제294회 평창군의회 임시회
조례심사특별위원회(2024. 5. 17.)

「평창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
일부개정조례안」

검 토 보 고 서

조례심사특별위원회
(전문위원 김 영 옥)

「평창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
일부개정조례안」

검 토 보 고 서

1. 조례안 개요

- ❍ 제 안 자 : 평창군수 제출
- ❍ 제안일자 : 2024. 5. 7.
- ❍ 회부일자 : 2024. 5. 17.
- ❍ 상정일자 : 2024. 5. 17.

2. 제안이유

- ❍ 행정안전부 기금 개선 권고사항 반영을 위하여 위원회 구성을 변경하고, 평창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존속기한 도래에 따라 기금 존속기한을 연장하여 회계연도 간 재정수입 불균형을 조정하고 동일 회계연도 내에서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- ❍ 위원회 구성인원을 ‘12명 이내’에서 ‘20명 이내’로 변경하고 조례에 명기된 민간전문가 정원을 삭제하여 행정안전부 기금

개선 권고사항인 ‘민간위원 50% 이상 선정’을 반영하고자 함(안 제8조제1항, 제2항)

❍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 제4조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한 연장을 반영하고자 함(안 제14조)

4. 검토의견

가. 관련 근거

❍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 제16조에서 지자체는 **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고 규정**하고 계정별 재원, 용도를 정하며 이외에 **통합기금의 조성 및 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**하고 있음.

나. 입법의 취지

❍ 국민권익위원회 제도 개선 의결[1]에 따른 행안부 기금 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고자 위원회를 정비하고, 기금의 존속기한 도래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하여 통합기금을 효율적으로 지속 운용하고자 하는 것임.

---

1)「지방자치단체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관리·운용 합리성 제고」, 국민권익위원회, (2023. 10. 23.)

○. **통합기금 운용심의위원회 설치·운영 내실화**

- **민간전문가 비율(1/3) 미준수 시 기금운용 성과분석 평가에 반영**(감점요인)
- 비(非) 기금 통합 심의위원회의 심의 대행 금지
- 심의내역 및 금융기관 세부 예치현황 관리 강화

(이하 생략)

다. 조례안의 주요내용

❍ 안 **제8조(위원회 구성)**에서 평창군 통합재정안정화 기금 운용 심의 위원회 인원을 (현행) 12명에서 (개정) 20명으로 증원하고 한정된 민간전문가의 정원을 삭제하며 위원회의 민간전문가 참여 비율을 유동적으로 준수할 수 있도록 하여 제도 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고자 함.

❍ 안 **제14조(존속기한)**에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존속기한을 (현행) 2024년 12월 31일에서 (개정) 2029년 12월 31일로 5년 연장할 것을 명시함.

5. 종합검토의견

❍ 본 조례안은 **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하고 제도 개선 권고사항을 반영**하여 정비하는 것으로,

재정수입 불균형을 조정하고 동일 회계연도 내에서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**기금의 존치 필요성은 인정되는 바**이고, 존속기한 연장에 대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[2]를 거쳐 **사전 행정 절차도 적정하게 이행한 것으로 확인되는 등** 저촉사항 없이 규정된 것으로 판단됨.

---

2) '24년 제1회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심의 결과: **원안의결**

붙임 **국민권익위원회 의결서(발췌)**

국 민 권 익 위 원 회

의 결

의안번호 : 제2023 - 793호

의 안 명 : 「지방자치단체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관리·운용 합리성 제고」

대상기관 : 행정안전부, 243개 지방자치단체

의 결 일 : 2023. 10. 23.

주 문

「지방자치단체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관리·운용 합리성 제고」 방안을 별지와 같이 「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27조 규정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, 243개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권고한다.

이 유

별지와 같다.

Ⅲ. 문제점

4 통합기금 운용심의위원회 설치·운영 부적정

□ 기금 분야 전문성이 불분명한 민간위원 위촉 만연

○ 기금운용심의위원회는 민간위원 3분의 1 이상 참여가 의무화되어 있으나 지자체 13곳(5.9%)은 민간위원 구성 비율 미충족

< 기금운용심의위원회 민간위원 참여비율 규정>

o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」 제7조제1항 - 기금운용심의위원 구성 시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**민간전문가 3분의 1 이상** 참여 의무화

- 일부 지자체는 지방의원이 특수경력직의 정무직 공무원으로서 민간위원이 아니나 민간위원으로 간주

< 민간위원 참여비율 미준수 현황 >

지자체	구성현황				구성비율(%)	
	위원 수 (명)	해당 지자체 공무원	지방의원	민간위원 (대학교수, 회계사세무사 등)	민간위원	(지방의원 포함 시)
서울 ◎◎구	12	8	1	3	25.0	33.3
서울 ◇◇구	12	7	2	3	25.0	41.7
대구 △구	13	6	4	3	23.1	53.8
광주 ▽구	14	7	3	4	28.6	50.0
강원 ▧▧군	14	9	1	4	28.6	35.7
전북 ◍◍군	13	8	2	3	23.1	38.5
전남 ▣▣시	12	8	1	3	25.0	33.3
전남 ◆◆시	8	5	1	2	25.0	37.5
전남 ▨▨군	11	8	-	3	27.3	27.3
경북 ◴◴시	7	5	-	2	28.6	28.6
경북 ◲◲군	15	9	2	4	26.7	40.0

※ ▭ 표시 지자체는 심의위원회에 지방의원이 포함된 곳임

○ 특히, 형식적으로는 민간위원 1/3 이상 기준을 충족하나 기금 분야 전문성이 불분명한 민간위원 제외 시 법정 비율 위반사례 다수

- 비전문가인 민간위원 위촉 시 통합기금 관련 심의가 형식적으로 이뤄지고 기금자산 관리·운용의 부실 초래

* (주요 심의사항) 1. 통합기금운용계획 수립·결산보고서 작성 2. 주요항목 지출금액의 변경 3. 기금운용 성과분석 4. 통합계정으로의 예수 및 다른 회계·기금으로의 예탁 5. 통합기금 관리·운용에 관한 중요사항으로서 지자체장이 회부한 사항

< 기금운용·기금분야 관련성이 불분명한 민간위원 주요 위촉사례 >

자치단체	총 위원 수	민간 위원 수	위원 수	부적정 사례	민간전문가 구성비율(%)	
					당초	실제
□□ 광역시	25	16	9	1 A □□광역시 간호사회 회장 2 B ◇◇대학교 교수 / 식품영양학과 3 C 대한영양사회 △△·▱▱·◆◆ 지부장 4 D ◍◍대학교 교수 / 재활트레이닝학과 5 E ■■행복나눔무지개푸드마켓 3호점 점장 6 F 환경지원사업소 주민지원협의체 위원장 7 G ▤▤대학교 교수 / 소방방재학과 8 H ◆◆◆◆교육문화센터 교육연구소장 9 I ▥▥광역시 청소년활동진흥센터 센터장	64.0	28.0
강원 ○○군	14	4	2	1 A ▽▽골프대학교 교수 2 B ▽▽골프대학교 교수 ➡ '22년 강원도 종합감사 지적사항	28.6	14.3
강원 △△시	15	15	9	1 A ◇◇대학교 교수 / 수산생명의학 2 B ◇◇대학교 교수 / 관광경영학 3 C ◎◎대학교 교수 / 건축공학 4 D ◎◎대학교 교수 / 건축공학 5 E ▧▧대학교 교수 / 사회복지학 6 F ◨◨도립대학교 교수 / 레저스포츠 7 G △△시여성경제인연합회장 / 자영업(건기공사) 8 H △△시 번영회장 / 자영업(자동차부품제조) 9 I 대한전문건설협회 △△시 협의회회장	80.0	20.0
경기 ◇◇시	13	8	5	1 A ◫◫국립대학교 교수 / 건축학과 2 B ◪◪예술대 교수 / 창의융합교양학과 3 C ◪◪예술대 교수 / 방송기술학과 4 D ▽▽대학교 교수 / 조경학과 5 E 동양대학교 교수 / 유아교육학과	61.5	23.1
경기 ◎◎시	15	12	8	1 A □□건축사사무소 대표 2 B 한국▣▣공사 ◇◇◇◇지역본부 도시재생건설지원센터장 3 C ▥▥투자평가협회 타당성평가 대행자 4 D △△대학교 교수 / 건설시스템안전공학과 5 E ▲▲대학교 교수 / 사회복지과 6 F ◐◐대학교 교수 / 미디어영상광고홍보학부 7 G ◍◍대학교 교수 / 건설환경에너지공학부 8 H ◭◭시 주민자치협의회장	80.0	26.7
경기 ◆◆군	15	10	9	1 A ▢▢리 / 이장 2 B ◧◧면 / 부녀회장 3 C ◩◩면 / 이장협의회장 4 D ▤▤리 / 이장 5 E ▨▨리 / 이장 6 F ▽▽면 / 부녀회장 7 G ◒◒면 / 부녀회장 8 H 지역사회보장협의체 / 위원장 9 I 희망행복마을만들기 / 위원	66.7	6.7

Ⅳ. 개선방안

4 통합기금 운용심의위원회 설치·운영 내실화

□ 민간전문가 비율 미준수 시 기금운용 성과분석 평가에 반영

○ 「지자체 기금운용 성과분석 기준」의 '기금운용심의위원회 운영 적정성' 평가지표에 민간전문가 비율 1/3 미만에 대한 감점기준 신설

※ 현재 '민간전문가'가 아닌 '민간위원' 비율 1/3 미만의 경우에만 페널티 부여, 비전문가라 하더라도 '민간위원' 1/3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 불이익 없음

▢ **지방자치단체 기금운용 성과분석 기준**

:「기금운용 성과분석 기준」의 7개 지표(2개 분야) 중에서 [기금운용의 건전성 분야(65점)] 內 **3. 기금 운용 심의위원회 운영 적정성(10점)**]

3.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운영 적정성(10점)

산정공식

○ **(지표)**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운영 현황을 파악하여, 다음의 4개 항목 중 충족하는 개수를 평가하여 산출

① 위원 중 민간전문가 비율 1/2 이상
② 소집회의 연간 2회 이상 개최
③ 소집회의 시 위원 평균 참석율 1/2 이상
④ 소집회의 시 위원 평균 참석율 2/3 이상

⇒ 심의위원회 운영의 적정성 = **60점(기본점수)** + 항목 1개 충족당 10점

※ 단, 민간위원 비율이 1/3 미만인 경우 타 항목 충족여부와 관계없이 0점 처리, 기본점수 미부여 (지방기금법시행령 제7조제1항)

문제점	① 법령과 달리 민간전문가 대신 민간위원 1/3 비율로 완화하여 규정 ② 법령을 위반한 민간전문가 1/3 미만에 대해서는 별도 감점 기준 없음 ※ 기본점수(60점) 이외에 4개 세부지표(각 10점) 중 하나인 '민간전문가 비율 1/2 이상' 기준은 사실상 가점으로 운영

○ **(점수산정)** 자치단체별 개별기금 지표의 산술평균 값을 15점 만점(배점)으로 점수화(절대평가 방식)

$$\text{자치단체 점수} = \frac{\text{기금별 적정성 지표 합계}}{\text{기금 개수(n개)}} \times \frac{15}{100}$$

※ 해당 기금 및 자치단체의 특수한 상황이 있는 경우 설명자료 제출 가능

[붙임 2]

평창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제출자 : 평 창 군 수

평창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272

제출년월일 : 2024. 5. 7.
제 출 자 : 평 창 군 수

1. 제안이유

행정안전부 기금 개선 권고사항 반영을 위하여 위원회 구성을 변경하고, 평창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존속기한 도래에 따라 기금 존속기한을 연장하여, 회계연도 간 재정수입 불균형을 조정하고 동일 회계연도 내에서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가. 위원회 구성 관련 조항 변경(안 제8조)

나. 기금 존속기한 연장(안 제14조)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별첨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해당기관 없음

라. 기 타

1) 입법예고(2024. 3. 25. ~ 2024. 4. 14.) 결과, 특기할 사항 없음

- 평창군 공고 제2024-443호, 기획실-4636(2024.3.21.)호

2) 규제심사 :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[기획실-4502(2024.3.19.)호]

3) 부패영향평가 : 개선사항 없음[기획실-4502(2024.3.19.)호]

4) 성별영향평가 : 개선사항 없음 [가족복지과-10898(2024.3.25.)호]

5) 법제심사 : 적정[기획실-6385(2024.4.22.)호]

6)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: 원안의결[기획실-6890(2024.4.30.)호]

평창군조례 제 호

평창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평창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8조제1항 중 “12명”을 “20명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“민간전문가 4명을”을 “민간전문가를”로 한다.

제14조 중 “2024년 12월 31일”을 “2029년 12월 31일”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8조(위원회 구성) ①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 ② 위원장은 총괄기금관리관이 되고, 위원은 군수가 기금관련 민간전문가 4명을 위촉하며, 당연직 위원은 각 기금의 기금운용관 및 재난업무 담당과장으로 한다. 단, 위촉직은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넘기지 않도록 한다. ③·④ (생 략)	제8조(위원회 구성) ① ---------- 20명 ----------. ② ---------- 민간전문가를 ----------. ③·④ (현행과 같음)
제14조(존속기한)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.	제14조(존속기한) ---------- 2029년 12월 31일----------.

관계법령 발췌

❑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

제4조(기금의 존속기한) ① 지방자치단체가 기금을 신설하여 운용하려는 경우에는 기금의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하여야 한다. 다만,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·운용되는 기금과 「지방공기업법」 제19조 제2항에 따른 지역개발을 위한 기금은 존속기한을 명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.

② 기금의 존속기한은 기금의 설치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으로 설정하여야 하며, 그 기간은 5년을 초과할 수 없다.

③ 존속기한을 넘어서까지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5년의 범위에서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. 이 경우 「지방재정법」 제33조 제9항에 따른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.

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의 존속기한 및 통합·폐지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한 5년 단위의 기금정비계획을 매년 작성하여 이를 「지방재정법」 제33조 제1항에 따른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.

❑ 평창군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

제15조(수당 등) ①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 또는 참석한 위원 및 관계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·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. 다만, 공무원인 위원 및 관계자가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거나 참석한 때는 제외한다.

❑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

[별표 2] 세출예산성질별 분류에 따른 집행기준

2. 일반운영비(201목)

2-1. 사무관리비(201-01)

다. 운영수당

1) 위원회 참석수당

○ 예산에 계상된 단가 또는 자치단체가 조례 등 자체적으로 정한 기준에 의하여 집행하여야 한다.

[별지 제2호 서식]

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(제3조제5항 관련)

1. 비용발생 요인

○ 심의위원회 개최에 따른 위원회 수당 지급

2. 미첨부 근거 규정

○ 평창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5항제1호

-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원 미만인 경우

3. 미첨부 사유

○ 평창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심의위원회 개최 시 지급되는 위원회 수당은 연평균 5천만원 미만으로 예상됨

4. 작성자

작성자	평창군 기획실장 주현관
연락처	(033) 330 - 2065